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I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235호
- 나. 발 의 자 : 김경 의원 등 10명
- 다. 발의일자 : 2024년 10월 16일
- 라. 회부일자 : 2024년 10월 18일

II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경제 진흥 활성화 및 창업 촉진, 기업 성장, 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, “ESG 경영”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등의 친환경적 ESG 관리 조항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.

III. 주요내용

- 가.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계획 등 수립 및 추진 규정 신설 (안 제16조의2)

IV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탄소중립기본법」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별도 작성내역 없음

V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이준석)

1.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환경·사회·투명 경영(ESG)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라 서울경제진흥원으로 하여금 ESG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자 발의됨.

2. ESG 경영의 등장 배경과 의미

- ‘ESG’는 기업이나 기관의 경영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측정하는 핵심 요소인 환경(Environment), 사회(Social), 지배구조(Governance)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,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개념임.
- 그리고 ‘ESG 경영’은 기업이나 기관이 환경 보호, 사회적 책임, 투명한 지배구조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, 장기적으로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경영 방식임.
- 현재 ESG 경영을 통한 지속적 성장은 전 세계적 가치로 통용되고 있으며, 각국 정부나 기업은 협업과 투자 대상을 ESG 경영지표와 국제표준 인증 획득 여부를 토대로 평가하고 결정하는 추세임.
- 특히 세계적 투자사인 미국 블랙록(BlackRock)의 CEO 래리핑크(Larry Fink)가 기후변화의 대응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투자 결정 기준으로 삼겠다고 공언(2020년)하면서 글로벌기업을 중심으로 ESG 경영이 본격화되었음.

- 예를 들어 네덜란드공적연금(APG)이 한국전력의 석탄발전소 건립 투자를 이유로 한국전력 지분을 매각하는 사례¹⁾가 발생하는 등 기업을 넘어 공공기관까지 ESG 경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.

3. 서울경제진흥원의 ESG 경영 추진 현황과 개정안 검토

- 국내적으로 ESG 경영에 관한 법령은 없으나, 서울시는 지난 2024년 3월 「서울특별시 환경·사회·투명 경영(ESG)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‘ESG 조례’)를 제정한 바 있음.
- 동 개정조례안은 ‘ESG 조례’ 제7조²⁾를 인용하여 서울경제진흥원으로 하여금 ESG 경영 및 관련 정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·추진하도록 하는 것임(안 제16조의2 신설).

< 신·구조문 대비표 >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신 설> | <u>제16조의2(환경·사회·투명 경영(ESG) 활성화)</u> 재단은 「서울특별시 환경·사회·투명 경영(ESG)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라 환경·사회·투명 경영(ESG)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|

1) “석탄 발전소 투자한 한전, 탄소감축 노력 부족” 해외 투자자들 '경고'(조선비즈, 2020.2.25.)

2) 제7조(공공기관의 환경·사회·투명 경영 (ESG) 활성화 등)

① 공공기관은 환경·사회·투명 경영(ESG)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환경·사회·투명 경영(ESG)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
2. 환경·사회·투명 경영(ESG)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
3. 환경·사회·투명 경영(ESG)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
4.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발간

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는 경우 환경·사회·투명 경영(ESG) 활성화를 위한 평가지표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 등을 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중점관리목표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- 이와 관련하여 ‘ESG 조례’의 제정 이후 기획조정실이 실시한 ‘출자·출연기관 ESG 경영 현황 조사’에 따르면, 조례 적용 대상이 되는 서울시 21개 출자·출연 기관은 이미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ESG 경영을 적용하는 중임.
- 특히 동 진흥원은 ESG 경영의 중장기 로드맵과 추진방향이 포함된 ‘2024 ESG 경영 추진계획’과 ‘2024 사회공헌 추진계획’을 수립하고 ESG 경영을 추진 중임.

< 서울경제진흥원 ESG 경영 중장기 로드맵 >



- 이와 같이 동 진흥원을 포함한 서울시 21개 출자·출연 기관이 이미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난 3월에 제정된 ESG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ESG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, 같은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범위에 서울시 21개의 출자·출연 기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.
-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이 동 진흥원의 ESG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

규정하는 것은 개별 출연기관에 대한 ESG 경영의 중요성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으나, 이미 ‘ESG 조례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개별 조례에 중복 규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|
| 담당 조사관 | 연락처 |
| 이성찬 | 02-2180-8061 |